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화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재정비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안 제23조의3 제1항)

- * (1호) 가뭄 대비를 위한 수자원시설 현황 및 효율적 활용
- * (2호) 가뭄 대비 장비 확보 및 자재·물자 비축
- * (3호)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 (4호) 가뭄단계별 용수 공급 대책
- * (5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 * (6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생활수·먹는물 분야, 농업·공업용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사·중복되는 조문 재정비(안 제24조)

다. 특별시·광역시·자치구를 포함한 가뭄대비 대책 수립 가능(안 제23조의3 제2항)

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안 제24조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수도·지하수 등 수자원시설 현황 및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2. 가뭄 대비 장비의 확보 및 자재·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용수 연계,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자치구의 가뭄 대비 대책을 포함하여 제1 항에 따른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수도·지하수 등 수자원시설 확보 및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뭄 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장비 지원대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역별 가뭄대비 대책에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3(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2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상수도·지하수 등 수자원시설 현황 및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u> <u>2. 가뭄 대비 장비의 확보 및 자재·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u> <u>3. 용수 연계,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u> <u>4. 가뭄단계별 용수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u> <u>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자치구의 가뭄 대비 대책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뭄</u>

현행	개정안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대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u>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 ----- ----- ----- ----- ----- -----.
1. 생활수·먹는물 분야	1. 상수도·지하수 등 수자원시설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u>설 확보 및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u>
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섬·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물 절약대책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공업 용수 분야	2. 가뭄 단계별 용수 공급 대책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u>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설치대책</u> <u>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u> <u>다. 지하수·간이용수원 개발 대책</u> <u>라. 인력·장비 지원대책</u> <u><신 설></u> <u>3.·4. (생략)</u> <u><신 설></u> <u>② (생략)</u>	<u>3. 인력·장비 지원대책</u> <u>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역별 가뭄대비 대책에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연 락 처	(044) 205 - 6361